

## 지방계약법령의 조문별 해설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관

최두선



### 지방계약법령의 조문별 해설

지난해 5월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대한 조문별 해설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제22조 지명경쟁입찰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영)제22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법 제9조제1항의 단서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시행령 22조는 지명경쟁 입찰대상 계약을 설명하고 있다. 제1호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자재·물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이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를 10인 이내인 경우에 지명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실제로 전국적으로 10인 이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이나 특허를 수반하는 공구나 물품의 제조를 하는 경우 여러개의 신기술이나 특허 중 어느 하나를 반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기술이나 특허가 10개 미만인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지명입찰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이 과연 10인 미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제2호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동내용은 일정금액 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명입찰을 하기가 가장 용이한 방법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용역에 대한 지명입찰은 폐기물 처리장등 등의 거리가 먼 경우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장애가 될수 있으므로 지명경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제3호부터 4호, 5호 역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지명입찰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6호와 8호는 인증제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명입찰이 용이하다고 본다.

7호 역시 수의계약대상을 수의계약 하지 않고 지명입찰하기 때문에 대상이 분명하다. 제9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복구하는 경우에 지명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수도관 파열 등 계약을 미리 할 여유가 없는 시설물의보수나 복구에 대하여 미리단가계약을 해두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수나 복구 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거리가 먼곳에 사업자가 있는 경우 장비나 인력의 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복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근거리에 지명방식을 통하여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는 방식이다. 10호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중 일부를 지정하여 지명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음은 지명입찰의 지명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규)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



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1호 가목의 의미는 공사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 기술을 보유한 자 중에서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보유 업체의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그 업체의 실적이나 경영상태 또는 신용도를 파악하여 그 중에서 몇 개의 업체를 지명할 것인지 결정하고 실적이나 경영상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자를 지명해야 된다.

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제 25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한다는 의미는 당해발주공사의 2배 이내에서 시공능력 하한 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 시공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령 추정가격이 3억원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시공능력의 하한 금액을 6억원 이내에서 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인 업체 중에서 지명을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1호 다목의 경우에는 보수나 복구공사를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 인접한 거리에 있는 업체를 지명하거나 장비를 보유한 업체를 지명하여 보수 및 복구공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2호는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에 대하여 지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명의 기준이다. 가목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이나 생산설비, 판매망 등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유류단가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는 관용차량의 정기적인 유류 주유를 하는 경우에 원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 불편이 있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

하기 때문에 청사 부근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여 지명하여 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다음은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자의 지명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지명경쟁입찰에서 지명은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영)제23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규)제2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자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명경쟁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명의 수(5인 이상)이다. 이는 지명의 공정성을 위하여 최소한 5인 이상이 지명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5인 이상을 지명한 경우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함은 경쟁의 성립을 2인 이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2항과 제3항은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 지명대상자를 지명하여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규칙 제29조는 지명경쟁입찰시 통지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별지 2호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찾으시면 된다.



**제28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체 현황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28조는 지명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1호내지 6호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이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지명입찰이 투명성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합이나 특정업체에 고정적으로 지명 입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유사물품 복수 입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영)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방법은 유사물품 중에서 어떤 물품을 살지 고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입찰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하자 조건은 2000cc 이지만 어느회사 제품을 살지는 입찰을 통하여 결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우선 예정가격을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각각 결정해야 한다 A회사의 예정가격이 3천만원 B회사의 가격이 2800만원 이라고 할 때 A회사는 2600만원, B회사는 2500만원을 투찰한 경우 어느 회사의 제품이 낙찰될까? A회사는 2600만원/3000만원 하면 86.6%, B회사는 2500만원/2800만원 하면 89.2%로 결국 A회사의 제품이 낙찰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물품구매 입찰하는 방식을 유사물품 복수 **경쟁입찰** 이라고 한다. 2가지 이상의 비슷한 물품중 어느 물품으로 구매 할 것 인지 고민하는 경우에는

동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에서 유의할 점은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조사하거나 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수의계약은 크게 금액구분에 의한 수의 계약과 조건 충족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금액 구분에 의한 수의계약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이상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조건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하기로 하자.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의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타.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

- 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나.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 다. <삭 제>
- 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삭제<개정 2007.9.20>
-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다. 삭제<개정 2007.9.20>
-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25조 1항 1호를 살펴보자. 1호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의 급등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조문이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으나 갑자기 국제적인 행사를 실시하여 입찰에 의할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이를빌미로 하여 수의계약은 할수 없을 것이다. 1의2호는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등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시험지를 인쇄하거나 비밀문서를 인쇄하는 경우 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2호의 경우에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 해당된다. 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7.10.5〉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 경우에는 재해복구대상사업 중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지명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 견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이란 정부조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국가기관을 의미하므로 국립대학교 부설연구소나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을 의미한다.

제4호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수 없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4호의 가목을 살펴보자

가목의 경우에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목역시 작업상 혼잡한 경우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목은 마감공사, 마목은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의 근거이나 구체적인 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 구 분  | 구 체 적 범 위   | 수의계약 제외 대상 공사   |
|--|---|---|
| ①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하수도접합, 조정, 토공, 준설 및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li> <li>▪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li> <li>▪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li> <li>※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li> </ul> |
| ②작업상 혼잡 등의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li> </ul>  |
| ③마감공사의 경우  |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예정금액의 2분의1미만인 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감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li> <li>▪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이상 인 공사</li> <li>▪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li> <li>※ 연대보증시공,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li> </ul>                               |
| ④특허 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기술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

위 수의계약의 대상은 평가를 하여 수의계약여부를 판단하는데 50억원이상 공사는 95점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평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   | 담당   |   |  | (인)                                  |  |
|---------------|---|--|---|--|--------------------------------------|--|
|               |   | 과장   |   |  | (인)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등급   | 신용평가  | 점수   |                                      |  |
| 일반사항          | 시공능력<br>시역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li> <li>발주공사 예정금액의 2배 이상</li> <li>발주공사 예정금액의 1.5배 이상</li> <li>발주공사 예정금액의 1.5배 미만</li> </ul> |   | 8.0점<br>7.2점<br>6.4점<br>5.6점   |                                      |  |
|               | 시역<br>유출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행중인 관급공사 1건 이하</li> <li>진행중인 관급공사 2건</li> <li>진행중인 관급공사 3건</li> <li>진행중인 관급공사 4건이상</li> </ul>                |   | 8.0점<br>7.2점<br>6.4점<br>5.6점   |                                      |  |
|               | 경영상태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li> <li>-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0% 이상</li> <li>120% 이상</li> <li>100% 이상</li> <li>70% 이상</li> <li>70% 미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A- 이상</li> <li>A+ 이상</li> <li>BBB 이상</li> <li>B- 이상</li> <li>CCC+이상</li> </ul> | 8.0점<br>7.2점<br>6.4점<br>5.6점<br>4.8점 |  |
|               | 부실시공의<br>제재처분<br>(수의계약요청서<br>접수일 기준<br>최근1년 이내)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br>등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br><br>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br>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li> <li>유</li> <li>무</li> <li>유</li> </ul>                                   | 3점<br>△3점<br>3점<br>△3점               |  |
| 기술사항          | 사유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평점(70)   |                                      |  |
|               | ①하차   | ㉗공사규모비   |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 [(㉗+㉘)/2] ×70%=점수  |                                      |  |
|               |   | ㉘하차보수보증기간  | (전차하차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               | ②혼잡   | ㉙시간적 중복도   |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㉗+㉘)/2] ×70%=점수  |                                      |  |
|               |   | ㉚공사규모비   |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  |                                      |  |
| ③마감           | ㉛뒷마무리공사 규모비                                     |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100= %   | ㉗×70%=점수  |  |                                      |  |
|               | ㉜부대시설공사 규모비                                     |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설공사예정금액] ×100= %   | ㉘×70%=점수  |  |                                      |  |
| ④특허<br>공법 등   | ㉝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 (특허·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금차예정금액)×100= %  | ㉗×70%=점수  |  |                                      |  |
| 평가<br>결과      | 일반사항  | 점  | 경쟁계약 추진대상   |  |                                      |  |
|               | 기술사항  | 점  | 수의계약 추진대상   |  |                                      |  |
|               | 합계  | 점  |   |  |                                      |  |

- ※ 기술사항 ①, ②, 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수의계약의 대상공사에서 하자구분이 곤란한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의 제외대상 공사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반적인 토목 이나 조정 공종등은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도로나 하천의 연결공사, 조정공사의 확장공사 등은 하자구분곤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이외에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되는 전기, 통신공사나 소방공사등 다른법령에 의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전공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가 50%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작업상 혼잡도를 평가하는 경우 일단 2개의 공사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시행하려는 공사기간대비 하여 진행중인 공사기간의 비율이 40%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수 없다. 마감공사는 이미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었으나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추가로 뒷마무리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마감공사는 기존 공사 금액의 1/2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1/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특히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는 해당공사에 특히나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사항에 만점을 받는 사업자는 평균 87%이상 이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점수가 산정되고 있다.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하겠다. 

